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935호 2025. 8. 18.(월)

차 례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70호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강제처리(폐차) 2차공고 ——— 4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04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정안— 6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7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5-15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8.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16번길 45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5.8.1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5-08-1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164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16번길 45 (청라동)	20180827	청서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60M 오른쪽으로 분기된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73-2	인천광역시 서구 솔모령이길 10 (원당동)	20200720	"솔모령이"라는 옛 지명에서 착안	
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67-23	인천광역시 서구 솔모령이길 13 (원당동)	20200720	"솔모령이"라는 옛 지명에서 착안	
4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48-2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산로46번길 82 (대곡동)	20130730	가현산로 시작지점부터 약 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87-30, 387-4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190-14 (오류동)	20090710	검대마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59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395-99 (오류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54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367-1 (경서동)	20090710	계양산과 천마산사이 정령이고개를 통과하는 도로구간으로 정령이고개의 한자표기말인 &t;경명&t;명칭에서 부여	
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54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367 (경서동)	20090710	계양산과 천마산사이 정령이고개를 통과하는 도로구간으로 정령이고개의 한자표기말인 &t;경명&t;명칭에서 부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670호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강제처리(폐차) 2차 공고

우리 구 무료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장기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강제 견인 후 반환 통지 및 공고 등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인수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 규정에 따라서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 8.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명 :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강제처리(폐차) 2차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5. 8. 18.(월) ~ 2025. 9. 3.(수).
3. 강제처리일시: 공고기간 이후
4. 폐차대상차량: [붙임] 참조
5.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인천 서구청 주차관리과로 방문하시어 차량을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고기간 내에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2 제2항, 제3항 및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 등)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강제처리(폐차) 예정이며,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 (☎032-560-3225)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804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제정이유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안 제4조)
-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지원(안 제5조)

○ 의견제출

-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 전화 560-0873, 팩스 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다.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안 제4조)
- 라.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지원(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별첨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2. “지원대상학생”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4.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5.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을 매년 자체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체계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교육행정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3.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위원회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내 학교의 장이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 단위로 동,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운영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5조(지역위원회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지역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등의 제공.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다음 해의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췌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시행 2026. 3. 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원활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개발,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3.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와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4. 학교 및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5.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평가 및 조사·연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6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장은 지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장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지역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지역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교원,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사, 변호사 등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의 예방·방지와 아동에 대한 지원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위한 지원과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 자치법규 발췌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시행 2026. 3.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교육감과 협의된 사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
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4.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5.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

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예방 등의 지원
3.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의 지원
4.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MOU체결
 -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협력체계 이외에도 효과적인 협력체계가 발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로 군·구, 행정복지센터, 지역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조(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 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3. 기관 간 정보 공유
 4.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해당 업무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청, 군·구청, 인천경찰청 등 각 유관기관의 기관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관장

5.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의 추천을 받은 의사

7.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전문가

8.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5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항제5호부터 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표창)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공무원·단체·기관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8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8.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요소를 규정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운영 목적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아동친화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2)
- 나. 아동권리 옴부스퍼슨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 다. 어린이 참여위원회 표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
- 라.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설치, 구성, 기능 등 신설(안 제6장, 제30조 ~ 제33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아동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6822, 팩스 032-560-274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가.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나. 의견제출서(서식)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요소를 규정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운영 목적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친화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2)
- 나. 아동권리 ombuds퍼슨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 다. 어린이 참여위원회 표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
- 라.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설치, 구성, 기능 등 신설(안 제6장, 제30조 ~ 제3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조성 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를 “조성 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아동 실태조사 실시)”를 “(표준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태조사”를 “표준조사”로 한다.

제3장에 제14조의2, 제14조의3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4조의2(아동친화예산서의 작성) 구청장은 필요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예산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에서 검토 및 분석하여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의3(아동권리 옴부즈퍼슨)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중 “어린이와 청소년이”를 “어린이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성숙도 그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각각”을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의결한”을 “어린이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5회 이상으로 한다.

⑥ 어린이 참여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 참여위원회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제5호 중 “어린이·청소년”을 “어린이”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제30조(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 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1조(구성) ① 추진단의 단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행복과장으로 한다.

② 구성원은 복지국장 및 복지국 소속의 모든 부서장으로 한다.

제32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참여기구 제안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2. 옴부즈퍼슨 제안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4.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의견 조정
5. 아동권리를 위한 의견 제시

6. 기타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자체의 정책 또는 제도에 대한 개선방
안 논의 및 제시

제33조(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3. 각종 아동 유해요소로부터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아동 실태조사 실시)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표준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표준조사 -----

-----.

<신 설>

제14조의2(아동친화예산서의 작성) 구청장은 필요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예산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에서 검토 및 분석하여 그 자

<신 설>

제15조(어린이 참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참여위원회(이하 “어린이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구성) ①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연령과 성숙도 그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각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 ④ (생략)

⑤ 어린이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 전문가를 배치한다.

제1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의3(아동권리 ombudsman)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 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ombudsman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 ombudsman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어린이 참여위원회 설치) ---

--- 어린이가 -----

-----.

제17조(구성) ① -----

----- 성별을 고려하여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5회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위원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 4. (생략)
- 5.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⑤ ----- 어린이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
-----.

⑥ 어린이 참여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 참여위원회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 기능) -----
-----.

- 1. ~ 4. (현행과 같음)
- 5. 어린이 -----

6. (생략)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6. (현행과 같음)

<삭제>

제6장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제30조(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1조(구성) ① 추진단의 단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행복과장으로 한다.

② 구성원은 복지국장 및 복지국 소속의 모든 부서장으로 한다.

제32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참여기구 제안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2. 읍부즈퍼슨 제안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4.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의견 조정
5. 아동권리를 위한 의견 제시
6. 기타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자체의 정책 또는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및 제시

<신 설>

제33조(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
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8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8.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건강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조정하여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 구성 개정(안 제3조제1항)
- 정기회의 개최 횟수 개정(안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건강증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718-0502, 팩스 032-718-079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건강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조정하여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 구성 개정(안 제3조제1항)
- 정기회의 개최 횟수 개정(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30인”을 “15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기별 1회”를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u>30인</u> 내 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p>② ~ ④ (생 략)</p>	<p>제3조(구성) ① ----- ----- <u>15인</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u>반기별 1회</u> 개최를 원칙 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p> <p>1. 2. (생 략) ② · ③ (생 략)</p>	<p>제7조(회의 운영) ① ----- ----- ----- <u>연 1회 이상</u>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8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는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므로 “위촉직 위원”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는 지방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사항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조)
- 나.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심의 사항 삭제(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62, 팩스 032-560-274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는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므로 “위촉직 위원”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는 지방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사항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조)

나.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심의 사항 삭제(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별첨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 ③ (생 략)</p> <p><u>④ 위촉직 위원은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위촉하며,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등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을 구청장이 위촉한다.</u></p> <p><u>⑤ 위촉직 위원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가 접수 되었을 때 위촉하고, 해당 조례안의 처리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u></p>	<p>제2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p>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2. (생 략)</p> <p><u>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u></p> <p>4. ~ 6. (생 략)</p>	<p>제3조(기능) ----- -----.</p> <p>1. 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4. ~ 6.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출·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으로 한다.

③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
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8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8.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진입규제, 차별적규제, 가격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안전 저해, 소비자 선택제한 등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우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문구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선 구매”를 “구매 권장”으로 수정(제명,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0991, 팩스 032-560-273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진입규제, 차별적규제, 가격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안전 저해, 소비자 선택제한 등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우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문구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선 구매”를 “구매 권장”으로 수정(제명,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025-18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구매 권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우선 구매하여”를 “구매 권장하여”로 한다.

제4조 중 “우선구매”를 “구매 권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구매촉진)”을 “(구매 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선구매”를 “구매 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구매촉진”을 각각 “구매 권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지역상품 구매 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선구매를”을 “구매 권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선하여”를 “권장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와 관내 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u>우선 구매</u>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u>우선구매</u>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6조(구매촉진)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u>우선구매</u>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지역상품 <u>구매촉진</u>을 위한 중·장기 계획</p>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구매 권장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구매 권장</u>하여 ----- -----.</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u>구매 권장</u>----- ----- ----- -----.</p> <p>제6조(구매 권장) ① ----- ----- ----- <u>구매 권장</u>----- ----- -----.</p> <p>② ----- -----.</p> <p>1. ----- <u>구매 권장</u>----- -----</p>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 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
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의 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
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
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
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
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2. ----- 구매 권장-----

3. ----- 구매 권장--

제8조(지역상품 구매 권장) ① ----

----- 구매 권
장을 -----.

② -----

----- 권
장하여 -----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